

일본 국내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 분들께

1 급여 수입에 관한 세금

급여 수입에 과세가 된 세금에는 나라의 세금으로 원천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이하 「원천 소득세등」 이라고 한다.)와 지방의 세금인 시민세, 현민세가 있습니다.

원천 소득세 등은 매월 지급 되는 급여로 부터 차감해 연말에 1년간의 세액을 정산합니다.

시민세, 현민세는 급여 수입이 있었던 해의 다음해 1월 1일 현재에 주소가 있는 시구촌에 과세가 되어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 되는 급여로 차감 됩니다.

2 시민세·현민세의 납부 방법

시민세, 현민세가 과세가 되면 보통징수 또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징수는 과세 되어져 있는 본인이 시구촌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송부된 납세 통지서에 의해 원칙 과세된 해의 6월, 8월, 10월 및 1월 중에 시구촌 창구나 금융기관등에 납부를 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에 의해 납부하게 됩니다.

특별징수는 근무지의 사업주가 본인의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부터 시민세, 현민세를 차감해 본인을 대신하여 과세 되어진 해의 6월 부터 다음해 5월에 걸쳐 시구촌에 납부하는 방법 입니다.

3 출국하는 경우의 시민세·현민세의 납부 방법

년도의 도중에 출국을 하게된 경우에도 과세되어져 있는 년도분의 시민세, 현민세는 전액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6월(납세 통지서 송부후)부터 12월에 출국하는 분

A)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출국하기 전에 1년분의 시민세, 현민세의 납부를 부탁 드립니다. 전액을 한번으로 납부하는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도시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납세 관리인으로 정해 시민세, 현민세를 본인을 대신해 납부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납세 관리인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민세 창구에 있는 「납세 관리인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B) 특별징수에 의해 급여로 부터 시민세·현민세가 차감 되고있는 경우

근무처의 경리 담당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퇴직하는 달에 지급되는 급여로 부터 아직 납부 되지 않은 시민세, 현민세를 한번에 차감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번으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직 납부 하지않은 시민세, 현민세에 대해 시구촌으로 부터 납세 통지서가 송부되므로 그것에 의해 납부를 부탁 드립니다. 단 이 경우는 자신에게 납세 통지서가 도착할때 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근무처의 경리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 최후에 지급되는 급여로 부터 한번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② 1월부터 6월(납세 통지서가 송부되기 전)에 출국하는 분

출국하는 해에 과세가 된 시민세, 현민세의 납세 통지서는 6월 중순에 송부 됩니다. 전년 중에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시민세, 현민세가 과세 되어진 분은 출국시에 납세 관리인을 정하든지 납세 통지서가 송부되기 전에 미리 자신이 납부를 하고자하는 「예납」이라는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서의 사본나 원천 징수표, 시민세, 현민세 신고서등 전년도의 소득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토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액의 납부 방법은 후일 미토시로부터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출국하는 년도의 시민세, 현민세에 대해 납부를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4 조세 조약에 대해

① 개요

일본은 현재 71 국, 지역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헤세이 30년 11월 1일 시점) 그 중에는 교류 활동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교수등 유학생 및 사업 수습자등**이 받는 보수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급여의 수입이 있어도 원천 소득세등이나 시민세, 현민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 됩니다. 단 그 요건은 나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②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한 수속에 대해

근무처로 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통상은 급여로 부터 원천 소득세등이 차감 되어집니다.

단 근무지가 조세 조약에 관계하는 수속을 하고 있는 경우는 급여로 부터 원천 징수세등이 차감 되지않게 됩니다.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는 「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무처에 수속을 의뢰해 주십시오. 세무서에서의 수속이 끝나면 근무처로 부터 「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받아 「조세 조약 규정에 관계하는 비과세 소득 신고서」(시민세과 창구에 있습니다.)와 같이 2019년 3월 15일까지 시민세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 교수등, 유학생 및 사업 수습자등 으로 급여로 부터 원천 소득세등이 차감 되고 있는 것을 후에 알게된 경우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는 「세무 조약에 관한 신고서」와 「비세 조약에 관한 원천 징수 세액의 환부 청구서」를세무서에 근무처가 제출하는 것으로 환부 청구를 할수 있으므로 근무처에 수속을 의뢰해 주십시오. 세무서에서 원천 소득세등의 환부 수속이 끝나면 근무처로 부터 「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받아 「조세 조약의 규정에 관계하는 비과세 소득 신고서」(시민세과 창구에 있습니다.)와 같이 시민세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처
시민세・현민세에 관해 미토 시역소 시민세과 미토시중앙1초메 4번 1호 전화 029-224-1111
원천 소득세에 관해 미토 세무서 원천 소득세 담당 미토시 키타미 마치 1-17 전화 029-231-4211(대표)

